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-12호

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대한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0년 3월 30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취급국의 우편창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 변경 고시

대 상 업 무 (유료우편물에 한함)	위 탁 수 수 료	비고
1. 국내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	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	변동 없음
가. 국내등기통상우편물(요금별·후납 및 수취인부담·후납부담 포함)	각 통수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280,000원 지급	
1) 월 접수 우편물 1통부터 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77 상당액	
2) 월 접수 우편물 501통부터 1,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2 상당액	
3) 월 접수 우편물 1,501통부터 2,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37 상당액	
4) 월 접수 우편물 2,501통부터 3,5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7 상당액	
5) 월 접수 우편물 3,501통부터 5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5 상당액	
6) 월 접수 우편물 5,001통부터 7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0 상당액	
7) 월 접수 우편물 7,001통부터 10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4 상당액	
8) 월 접수 우편물 10,001통부터 20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	
9) 월 접수 우편물 20,001통부터 30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	
10) 월 접수 우편물 30,001통 이상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.5 상당액	
나. 국내등기소포우편물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90,000원 지급	
1) 월 접수 우편물	즉납요금의 100분의 15 상당액	
다. 내용증명수수료	통당 80원	
2. 국제특수취급우편물 접수(즉납, 별납 및 후납)	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	
가. 국제등기통상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10,000원 지급	
1) 월 접수 우편물	접수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	
나. 국제소포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5,000원 지급	
1) 월 접수 우편물	접수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	
다. 국제특급(EMS)	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10,000원 지급	
1) 월 접수 우편물	접수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	
3. 우편요금 등 우편물의 접수	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	
가. 우편요금 등 즉납우편물	우표류판매 할인율 적용 - 우표를 첩부하지 아니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우편물 즉납액에 우표류 매수금액을 합산하여 할인율 적용 · 국내 : 일반(통상·소포), 등기통상우편물 · 국제 : 일반통상우편물	
나. 별납 및 후납우편물	별·후납우편물 접수요금의 4% 상당액 - 국내 : 통상(일반·등기), 일반소포우편물 - 국제 : 일반통상우편물	
다. 전자우편 1회 접수물량 1통 ~ 500통	우편요금의 3%(제작수수료 제외)	신규 추가
다. 전자우편 1회 접수물량 501통 ~ 1,000통	우편요금의 2%(제작수수료 제외)	
다. 전자우편 1회 접수물량 1,001통 이상	우편요금의 1%(제작수수료 제외)	

부칙

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9-22호는 폐지한다.